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 명단, 기피 신청 절차 등을 회의일 3일 전까지
안전 당사자에게 통지 등〉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3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광희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4.
3. 회부연월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는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심의회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심의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위원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회의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⑦ 심의회는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서면 진술을 포함한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⑥</u> (생략)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됨.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위원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공정한 심의 절차 및 당사자의 기피 신청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전 통지기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이의신청 처리기간(7일)에 맞추기 위하여 심의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8조¹⁾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원칙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처리기간에 관한 현행규정의 취지는 신중한 처리 못지않게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적극적 행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의신청 처리기간(7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기간(통상 30일~ 6개월) 보다 짧은 데 따라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심의회를 서면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됨.²⁾

【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 처리기간 】

법령	이의신청 종류	관련위원회	처리기간
국세기본법	국세 등 처분의 불복	국세심사위원회	30일 또는 60일 이내
난민법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	난민위원회	6개월 이내(연장 6개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30일 또는 60일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벌점 부과 이의신청	벌점심의위원회	40일 이내

자료 : 행정안전부

둘째, 심의회 참석대상 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와 관련해서는 심사 안

2)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보공개심의회 담당자 설문조사(2025.10.21.~31., 536명)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전체의 51%)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주로 서면 개최로 진행하고 있고, 서면 개최의 주요 사유로는 법정 처리기간(25%) 및 외부위원 참석 가능성(24%)으로 파악됨.

건의 특성, 현행법상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기피신청 기회가 보장되는 점, 회의 운영상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우려, 관련 입법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심의회의 안건이 현행법 제9조제1항 각 호3)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④ (생략)

의회 참석대상 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의 필요성이 미흡해 보임.

이에 더하여 현행법 제12조의2⁴⁾에서는 심의회의 위원 중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시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기피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기피신청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가 있으며, 참석 대상 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부당한 압력 등으로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⁶⁾ 등 회의체 운영에 관한 입법례는 전체 위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안과 같이

-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⑪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심사와 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회의 안전 당사자에게 회의참석 대상 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 현행법상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기피신청 기회 보장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회의체 운영에 관한 입법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심의위원 전체 명단 또는 심의위원 풀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구인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하고,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회의는 종료 후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원주시, 아산시, 포천시, 화천군, 유성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은,

i) 외부위원 명단을 회의 전 공개 시 회의 운영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ii) 이의신청 심사기간이 7일임을 고려할 때, 회의 개최 3일 전 사전통지 절차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iii) 이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 취지 및 의견을 서면 제출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추가로 의견을 받는다면
행정비용 및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
함.

문 의 처
02)6788-5339